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이광재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부교수
(kjee@sookmyung.ac.kr)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형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와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1. 서 론

이우택(2001), 손영화(2001), 오윤택과 정규언(2001) 등 최근에 수행된 다수의 문헌적(archival) 연구들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연결납세제도로 인해 법인세는 감소하지만, 조세제도의 과세공평성은 높아 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로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대한 법규정과 문헌조사에 근거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할 뿐 이론적 또는 실증적 증거에 근거

한 것이 아니다.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사전에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문헌적 연구에 비해 현저히 적다. 최기호(2001)는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개별납세제도에서 부담하는 법인세부담률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연결법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별법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는 연결법인의 낮은 과세공평성이 개별납세제도

의 오류 때문이라고 전제하여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반면에 이광재(2001)는 연결납세제도를 가정한 상황에서 연결그룹 지배회사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개별납세제도보다 악화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최기호(2001)의 예상과 상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광재(2001)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연결그룹 회사간에 결손금의 이전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가 개별납세제도보다 감소한다는 분석결과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인세 감소현상은 연결그룹 회사의 미공제 결손금을 같은 연결그룹의 타회사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연결납세의 과세구조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이광재(2001)의 분석결과는 개별납세제도에서 개별회사의 결손금을 그 회사의 미래소득이나 다른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타당하다. 현행 개별납세제도에서도 연결그룹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이 낮거나 공제가능 결손금이 있는 회사로 과세소득을 이전하여 조세최소화(tax minimization)를 도모하고 있다면 이광재(2001)가 보고한 연결납세제도의 법인세 감소효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Beatty and Harris(2001)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의 지주회사들이 같은 연결그룹에 속하는 은행간의 내부거래(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은행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한국에서도 회사의 산업과 영업의 특성, 환경과 수출에 대한 공헌도 등에 따라 소득공제, 준비금의 설정, 세액공제 등이 차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연결그룹도 미국의 은행처럼 연결그룹 소속

회사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결손금 공제로 인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이 이미 개별납세제도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도 법인세는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최기호(2001)와 이광재(2001)의 표본을 대상으로 현행 개별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중심으로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재검토하였다. 이러한 재검토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들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가리는 목적보다는, 최근 대부분의 문헌적 연구에서 막연하게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법인세 감소와 수평적 과세공평성 제고)가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려는 것이다.

특히 이광재(2001)가 보고한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는 한국의 연결그룹들이 현행 개별납세제도에서 이미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결그룹들이 미공제 이월결손금이 많고 유효법인세율과 과세소득이 낮아서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이 낮은 회사로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도 법인세는 추가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연결그룹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하지 않는다면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법인세의 감소는 불가피한 것이다. 연결그룹의 조세최소화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회귀분석의 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두 가지 회귀모형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이용한 과세소득의 이전을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로 인한 법인세 감소효과의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제2절에서는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차이와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3절에서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제4절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기술하였다.

II. 수평적 과세공평성

최근에 수행된 문헌적 연구들은 모두 한국 법인세 과세체계의 수평적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우택(2001)은 선진국의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연결납세제도가 결손금의 계열회사간 이전을 허용하기 때문에 법인세제의 조세 중립성을 제고하고 연결법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을 향상시킨다고 주장하였다. 이우택의 주장은 손영화(2001), 오윤택과 정규언(2001), 김문현과 김남영(2000)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이렇듯 문헌 조사에 근거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한국 법인세제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주로 선진국의 법규정과 문헌조사에 근거한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근본적으로 과세공평성의 제고효과는 연결납세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판단할 수 있는 실증적인 문제이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수행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최기호(2001)와 이광재(2001)에 불과하다. 그나마 이들의 연구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에 대해 서로 상반된 결과 또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최기호(2001)는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인 연결법인과 개별법인 사이에 법인세의 수평적 공평성이 서로 다르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평균 법인세부담률은 각각 0.36과 0.31이며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는 각각 0.252와 0.180이어서, 수평적 공평

성의 척도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도 연결법인(0.702)이 개별법인(0.58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호의 분석결과는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개별법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의 과세공평성이 낮다는 사실만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향상된다고 예측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광재(2001)의 분석결과와도 배치된다.

이광재(2001)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할 때 예상되는 법인세부담률과 변동계수를 측정하여, 현행 납세제도보다 연결납세제도에서 지배회사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분석결과를 보고하였다. 이광재(2001)에서 연결납세의 변동계수(7.0827)는 개별납세(0.4885)보다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광재의 분석결과는 연결납세액의 계산모형과 변동계수의 측정과정에서 몇 가지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본 절에서는 이들 선행 연구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들이 주장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중심으로 실험집단과 통제

집단을 구성하여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이 현행 납세제도에서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둘째, 이광재(2001)의 모형을 수정하여 연결납세에서 연결법인이 부담하게 될 과세공평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대부분의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과세공평성 제고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조기 증거(early evidence)를 제공할 것이다.

2.1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표본은 실험집단인 연결법인과 통제집단인 개별법인으로 구분된다. 연결법인은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연결그룹의 지배회사 중에서 한국신용정보(주)의 KIS2000 database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자료에 1997년~2000년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가 없는 기업과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한 기업을 제외하여 총 205개 기업-연(firm-year) 표본을 구성하였다.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인 연결법인과 동일한 업종에 속하는 연결재무제표의 작성의무가 없는 기업-연 표본 중에서 해당연도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이 연결법인의 $\pm 20\%$ 이내인 개별법인을 선정하여 연결법인과 1대1로 대응시켰다. 통제집단의

〈표 1〉 표본의 산업별 분포^a

산 업	표본
제 조 업	132개
건 설 업	28개
도소매업	21개
운 수 업	6개
금 용 업	18개
합 계	205개

a) 표본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에 따라 구분하였다.

선정과정에서도 개별재무제표를 입수할 수 없거나 법인세차감전손실을 기록한 회사는 배제하였다. 결과적으로 총 205개의 1대1 대응(matched pair) 표본을 구성하였으며, 표본의 산업별 분포는 <표 1> 과 같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평균 매출액(자산총액)은 각각 39,158 (46,990)과 32,977(41,173) 억 원으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15.8%(12.4%)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실험집단인 연결법인이 대부분(63%) 3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규모 기업 임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현상이다.

수평적 과세공평성의 척도는 전규안(1998) 등 과거의 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변동계수를 사용하였다. 변동계수는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를 그 평균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이때 법인세부담률은 법인세부담액(개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차 증가(감소)-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대 증가(감소))을 개별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본 연구와 달리 최기호(2001)는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을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측정하였다. 그러나 현행 납세제도는 연결납세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실제로 부담하는 법인세를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측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현행 납세제

도에서 연결법인이 부담한 법인세는 개별법인과 마찬가지로 지배회사의 개별재무제표를 통해 측정해야 한다.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법인세부담률과 변동계수의 분석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서 연결법인의 변동계수(0.536)는 개별법인(0.492)보다 0.044 만큼 높아서 연결법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은 평균과 표준편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최기호(2001)의 분석결과와 달리 개별법인의 법인세부담률(0.362)이 연결법인(0.35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을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부담액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통해 측정 한 최기호(2001)에서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을 과대 측정했기 때문이다.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을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동일 계정을 합산한 연결재무제표의 법인세비용, 이연법인세차(대), 그리고 연결회사간의 내부거래이익(손실)을 제거한 연결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을 통해 측정하면, 분자인 법인세부담액은 현행 개별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실제로 부담한 총 법인세액이 되지만, 분모인 과세소득은 내부거래이익(손실) 만큼 감소(증가)하기 때문에 법인세부담률이 과대(과소) 측정되는 것이

<표 2> 개별납세의 수평적 과세공평성^a

	통제집단(개별법인)	실험집단(연결법인)	통계량	p-value ^d
법인세부담률의 평균(A)	0.362	0.358	0.535 ^b	0.422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B)	0.178	0.192	1.527 ^c	0.135
변동계수(B/A)	0.492	0.536	0.622 ^b	0.386

a) 법인세부담률이 1보다 큰 기업은 극단치(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b) t value

c) F statistic

d) 양측검정의 통계적 유의수준

다. 이러한 해석은 대부분의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에서 손실보다는 이익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난 <표 4>의 분석결과와 일관성이 있다.

<표 2>의 분석결과는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개별법인보다 낮다는 주장과 거리가 있다. 오히려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개별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제고된다는 주장의 실증적 근거가 희박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2.2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다음에는 연결법인에 대한 수평적 과세공평성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통해 개선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앞에서 선정한 연결법인 표본을 확장하여 257개의 기업-연 표본을 구성하였다. 추가된 52개의 표본은 1997년~2000년의 기간에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 중에서 다른 조건을 모두 충족하였으나 법인세차감전순손실을 기록하여 표본에서 제외되었던 표본들이다. 이우택(2000)을 비롯한 대부분의 문헌적 연구에서 주목하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특성은 연결그룹 회사의 이월결손금과 당기 손실을 같은 연결그룹 소속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이전 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¹⁾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

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연결법인의 과세소득과 법인세부담률을 예측할 때 개별납세제도와 차별되는 연결납세제도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연결법인 중에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회사는 대개 당기에도 순손실을 기록하기 때문에, 순손실을 기록한 적자기업을 표본에서 제외하면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을 측정할 때 연결납세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 52개의 적자기업 표본을 추가로 포함하였다. 257개 표본의 산업별 분포는 <표 1>과 큰 차이가 없다.

총 257개 연결법인 표본에 대하여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의 변동계수를 측정하였다. 우선 개별납세의 변동계수는 앞에서 정의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다만 추가된 적자기업 표본에 대해서는 법인세부담률을 모두 0으로 측정하였다. 이것은 개별납세의 경우 당기 적자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이 0이고 같은 연결그룹 회사의 과세소득에서 공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현행 납세제도에서 발생하는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이하 '개별납세 법인세부담률')은 개별재무제표의 법인세부담액(개별손익계산서의 법인세비용+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차 증가(감소)-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대 증가(감소))을 개별손익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반면에 연결납세제도에서 예상되는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이하 '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은 이광재(2001)의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을 통해 측정하였다. 아

1) 손영화(2001)는 미국의 연결납세제도를 중심으로 개별납세와 차별되는 연결납세의 특성(연결수정항목)을 설명했다. 그는 이월결손금과 당기 손실의 이전공제 외에도 내부거래손익의 이연, 내부배당금의 공제, 투자제거차액의 수정, 연결납세 이전에 발생한 자회사 결손금의 공제제한(SRLY rule) 등 네 가지 특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내부거래손익의 이연은 과세시기의 차이를 초래할 뿐이며, 내부배당금의 공제와 투자제거차액의 수정 역시 개별납세에서도 배당세액공제 등을 통해 과세에서 제외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납세에 대한 차별적 특성으로 볼 수 없다. 다만 SRLY(separate return limitation year) rule과 관련하여,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사전 예측하는 본 연구에서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연결납세 전과 후의 발생액으로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연결납세의 도입 후에도 현재와 같은 수준의 결손금이 발생하며 공제조건도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현행 법인세법에서 인정하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모두 연결납세에서도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래의 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 계산식에서 법인세 증가액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연결납세와 개별납세는 기업의 선택사항이므로 개별납세보다 법인세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를 선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text{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 = (\text{지배회사의 법인세부담액} - \text{법인세 감소액}) \div \text{지배회사 개별손익 계산서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

$$\text{법인세 감소액} = (\text{종속회사의 법인세법상 공제 가능 이월결손금} + \text{종속회사의 당기순손실}) \times \text{지배회사의 개별법인세부담률}$$

$$\text{지배회사의 법인세부담액} = \text{지배회사 개별손익 계산서의 법인세비용} + \text{지배회사 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차 증가(감소)} - \text{지배회사 개별대차대조표의 이연법인세대 증가(감소)}$$

〈표 3〉에는 연결법인의 개별납세 법인세부담률과 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에 대한 분석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자회사 결손금의 공제효과로 인해 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0.341)은 개별납세 법인세부담률(0.354)보다 평균 0.013 감소하고 연결납세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0.277)는 개별납세 법인세부담률(0.205)보다 0.072 증가하여, 연결납세와 개

별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연결납세의 변동계수(0.812)는 개별납세(0.579)보다 현저히(0.233)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이광재(2001)의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이우택(2001) 등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표 3〉의 분석결과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모두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한적 가정아래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예측한 것이므로, 실제로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 후에 발생하는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해석돼야 한다.

III. 법인세의 감소효과

이광재(2001)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한 30대 기업집단 소속 연결그룹의 지배회사를 대상으로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법인세의 감소효과를 측정하였다. 그는 98개 기업-연표본에 대하여 연결법인세율과 개별법인세율을 비교 분석했는데, 연결법인세율(0.35393)이 개별법인세율(0.35781)보다 0.00388 만큼 낮은 것으로

〈표 3〉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차이분석^a

	개별납세	연결납세	통계량	p-value ^d
법인세부담률의 평균(A)	0.354	0.341	1.765 ^b	0.064
법인세부담률의 표준편차(B)	0.205	0.277	18.354 ^c	0.000
변동계수(B/A)	0.579	0.812	1.993	0.042

a) 법인세부담률이 1보다 큰 기업은 극단치(outlier)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b) t value

c) F statistic

d) 양측검정의 통계적 유의수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광재(2001)의 연결법인세 예측모형의 오류를 수정하고 표본을 확장하여 보다 뚜렷한 차이를 발견하였다. <표 3>에서 연결법인세부담률(0.341)은 개별법인세부담률(0.354)보다 평균 0.013이나 감소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와 이광재(2001)의 분석결과는 모두 현행 개별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 소속 회사의 미공제 결손금을 그 회사의 미래 소득이나 같은 연결그룹 회사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한 것이다. 만일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연결그룹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이 낮거나 공제가능 결손금이 있는 회사에 과세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면 <표 3>에 제시한 연결납세제도의 법인세 감소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Beatty and Harris(2001)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은행의 지주회사들이 같은 연결그룹에 속하는 은행간의 유가증권 매매거래를 통해, 유효법인세율이 낮은 은행으로 소득을 이전하여 조세를 최소화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에서도 산업과 영업의 특성, 환경과 수출에 대한 공헌도 등에 따라 소득공제, 준비금의 설정, 세액공제 등이 차별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회사마다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 따라서 한국의 연결그룹도 미국의 은행지주회사처럼 같은 연결그룹에 속한 회사들 사이의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내부거래를 통한 과세소득의 이전과 법인세의 감소현상이 이미 발생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도 법인세를 추가적으로 감소시키지 않을 것이다.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는 한국의 연결그룹들이 현행 납세제도에서 이미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연결그

룹들이 미공제 결손금이 많고 유효법인세율과 과세소득이 낮은 회사로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여,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도 법인세는 감소하지 않는다. 반면에 연결그룹들이 내부거래를 통해 조세를 최소화하지 않고 있다면 연결납세제도로 인한 법인세의 감소는 불가피하다. 본 절에서는 미국의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세목적의 소득이전(tax-purpose income-shifting)에 관한 문헌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개발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한국의 연결그룹이 이미 조세목적으로 내부거래이익을 이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3.1 가설의 개발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의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의 축소를 골자로 이루어진 1986년의 법인세법 개정(Tax Reform Act 1986)을 전후하여 기업의 조세목적 소득이전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대개 다국적기업의 과세소득과 법인세 부담액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그들이 고세율국가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전가격 등을 통해 저세율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연결그룹 전체의 법인세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였다(Harris 1993; Klassen et al. 1993 등). 한국에서도 노준화(1997)는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모회사에 대한 내부매출거래의 비율이 높고 본국의 법인세율이 배당세율보다 낮은 기업은 모회사에 대해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한국에서 본국으로 소득을 이전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에 Beatty and Harris(2001)는 미국의 여러 주에서 영업을 하는 28개 은행지주회사와 이들의 종속회사인 458개 은행을 대상으로, 같은 연

결그룹의 은행들이 상품으로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내부거래를 통해 연결그룹 전체의 법인세를 최소화 하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그들은 연결그룹에 속한 은행이 내부거래를 통해 실현시키는 유가증권처분 이익은 그 은행의 유효법인세율과는 역(-)의 관계를 갖지만, 같은 연결그룹 소속 타은행의 유효법인세율은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무보고목적의 이익조작 동기나 정부규제를 피하기 위한 자기자본유지 동기를 통제 한 후에도 유의하게 성립하였다. 만일 한국의 연결그룹 회사들도 서로 다른 유효법인세율을 부담한다면, 이들의 연구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기업의 특성과 조세부담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규모, 산업, 수출비율, 자본집약도, 부채비율, 기술집약도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이 다르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전규안 1993; 김용훈 1996; 김성기와 안숙찬 1994 등). 이들 연구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는 서로 일관성이 없었으나, 수출비율, 부채비율, 자본집약도와 유효법인세율은 일관성 있는 역의 관계를 보였으며, 산업간의 유효법인세율 차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대부분 서로 일치하였다. 한국의 연결그룹은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규모가 현저히 다르고, 연결그룹 차원의 사업다각화로 인해 참여하는 산업이 서로 이질적이어서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의 자본집약도와 부채비율도 차이가 크다. 또한 수직계열화를 통해 한 회사가 공급하는 부품을 다른 회사가 조립·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서 수출비율도 서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동일한 연결그룹에 속한다 해도 각 회사의 유효법인세율은 상이할 것이다.

선행 연구들을 종합하면, 같은 연결그룹에 속

한 회사라 해도 산업, 수출비율 등 기업의 특성에 따라 법인세부담률이 서로 다르며, 이로 인해 한국의 연결그룹도 소속 회사들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법인세부담이 적은 회사로 소득을 이전하여, 연결그룹 전체의 법인세를 최소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추론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개발하였다.

[가설1] 연결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법인세부담률이 낮을수록 더 많은 내부거래 이익을 보고한다.

[가설2] 연결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내부거래이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적을수록 더 많은 내부거래이익을 보고한다.

[가설3] 연결그룹에 속한 회사들은 세법상 공제 가능 결손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내부거래이익을 보고한다.

위의 가설에서 연결법인의 내부거래이익을 결정하는 변수로서 법인세부담률과 함께, 내부거래이익을 제외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과 세법상의 공제 가능 결손금을 선정한 것은 이들 변수가 조세목적의 소득이전을 결정한다는 선행 연구들에 근거한 것이다. Beatty and Harris(2001), Harris(1993), Klassen et al.(1993) 등 미국 연결그룹의 조세목적 소득이전에 관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법인세부담률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의 크기에 따라 연결그룹 내에서 과세소득의 흐름이 결정된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Wang(1991)은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기업의 규모와 유효법인세율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하였다. 그는 기업의 규모와 높은 상관성을 갖

는 결손금의 크기가 기업의 규모를 통해 간접적으로 기업이 부담하는 유효법인세율을 결정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한국 법인세법에서 당해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에서 이월 공제해 주는 것보다 일관성이 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연결그룹에 지속적으로 결손금을 기록하는 회사가 있는 경우, 결손 회사의 미래 소득을 통해 5년 내에 이월 공제하지 못하면 결손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연결그룹은 총 조세부담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내부거래를 통해 다른 회사의 소득을 결손 회사로 이전하여 이미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에 공제하려는 유인을 갖게 된다. 이러한 추론은 미국에서 1차 대전 이후에 연결그룹 내부의 소득분산을 통한 법인세 회피가 만연하여, 이를 억제할 목적으로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했다는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한다(Crestol et al. 1998).

3.2 표본과 연구모형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회귀분석에서는 제2절에서 선정한 257개의 지배회사 표본에, 이들의 종속회사 중 KIS2000 database에서 1997년~2000년의 개별재무제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는 339개 표본을 추가하여, 총 596개 기업-연 표본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변수의 측정과정에서 <표 4>의 주식에 보고한 기준에 따라 극단치로 분류된 84개 표본을 제외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회귀분석에 사용된 최종 표본은 512개이다. 제2절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이유로 법인세차감전손실을 기록한 적자기업도 표본에 포함시켰으며, 적자기업의 법인세부담률

은 모두 0으로 측정하였다.

$$GAIN_{it} = \alpha_0 + \alpha_1 TR_{it} + \alpha_2 EBGT_{it} + \alpha_3 LOSS_{it} + \alpha_4 ASSET_{it} + \varepsilon_{it} \quad (1)$$

$$GAIN_{it} = \alpha_0 + \alpha_{1a} TR_{it} + \alpha_{1b} TR(j)_{it} + \alpha_{2a} EBGT_{it} + \alpha_{2b} EBGT(j)_{it} + \alpha_3 LOSS_{it} + \alpha_4 ASSET_{it} + \varepsilon_{it} \quad (2)$$

위 식에서,

$GAIN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내부 거래이익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TR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부담률((t기 법인세비용±t기 이연법인세의 증가·감소)/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단 법인세부담률이 음수이면 0으로 측정)

$TR(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부담률의 평균

$EBG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EBGT(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j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LOSS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ASSE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 의 t 기말 자산총액의 자연대수(natural log)

회귀모형의 종속변수인 내부거래이익은 표본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개별재무제표의 주식 자료에서 입수하였다. 구체적으로 GAIN은 연결그룹 내부의 재고자산 매출거래에서 판매회사가 인식한 매출총이익을 그 회사의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²⁾ 그런데 모든 표본기업이 내부거래의 매출액만 공시하고 내부매출거래에서 발생한 실제 매출총이익을 공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매출액에 외부매출을 포함한 연평균 매출총이익율을 곱하여 내부거래이익을 추정하였다. 이렇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연평균 매출총이익율을 계산하면,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매출총이익율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내부거래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다.³⁾

그러나 연결그룹 내부의 매출거래를 제3자에 대한 매출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행하는 것은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되기 때문에, 연결그룹이 내부거래와 외부거래의 매출총이익율을 서로 다르게 적용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만일 연결그룹이 법인세법을 위반하여 외부거래와 다른 조건으로 내부거래를 수행

한다 해도, 그것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과세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연결그룹은 그 사실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다(법인세법 제52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총이익을 파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연결재무제표준칙 제12조에서 실제 매출총이익율을 알 수 없는 경우 연평균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내부거래이익을 추정하도록 규정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 LOSS는 개별대차대조표의 주식으로 공시되는 이월결손금 중에서 법인세법상의 공제시한 이후에 발생한 것(당해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것)만을 합산하고, 이를 총자산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⁴⁾ TR, EBGT, ASSET 등 나머지 변수는 모두 표본기업의 개별재무제표에 공시된 자료를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회귀모형(2)에서 TR(j)와 EBGT(j)를 독립변수에 추가한 것은 각각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되는 내부거래이익(GAIN)에 대한 법인세부담률과 세전이익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ASSET은 표본기업의 규모 차이로 인한 효과(size effect)를 통제하기 위한 변수이다. 본 연구의 가설이 타당하다면 회귀계수 중에서 a_1 , a_{1a} , a_2 , a_{2a} 는 음(-)의 부호를 갖고, a_{1b} , a_{2b} ,

- 2) 연결그룹은 조세목적으로 소득을 이전할 때 재고자산뿐 아니라 유가증권, 사채, 고정자산 매매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내부거래를 활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재고자산거래만을 대상으로 내부거래이익을 측정하는 것은, 재고자산거래 이외의 내부거래는 발생빈도와 거래규모가 작고 극히 일부 표본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종속변수로서 비효율적(biased and inefficient)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내부거래이익의 측정치로서 영업이익, 경상이익,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 과세소득에 대한 상관성이 더 높은 이익항목 대신에 매출총이익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이들 이익항목에 대한 추정이 매출총이익보다 주관적이고 복잡해서 이들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융기관은 매출총이익 대신에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에서 내부거래에 대한 영업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내부거래이익을 측정하였다.
- 3) 내부거래이익을 외부거래를 포함한 연평균 매출총이익율에 의해 추정하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측정오류를 통제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 대신에 내부매출액(내부매출액/총자산)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회귀분석을 따로 수행하였다. 내부매출액을 사용한 회귀분석결과는 회귀계수의 부호와 크기에 있어서 내부거래이익을 사용한 <표 5>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회귀식의 설명력과 유의수준은 <표 5>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았다.
- 4) LOSS를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측정하는 대신, 공제가능 결손금이 내부거래이익을 초과하면 1, 아니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하는 별도의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더미변수를 사용한 회귀분석결과는 연속변수를 사용한 <표 5>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회귀모형의 설명력과 회귀계수의 유의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표 4〉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a)}

변수	평균	표준편차	25%	50%	75%
GAIN ^{b)}	0.02070	0.02982	0.00195	0.00620	0.02309
TR ^{c)}	0.29743	0.14209	0.20234	0.26802	0.33130
TR(j) ^{d)}	0.23834	0.13506	0.15417	0.22955	0.28692
EBGT ^{e)}	0.00407	0.08337	-0.05616	0.00674	0.04414
EBGT(j) ^{e)}	0.00404	0.04953	-0.02755	0.00387	0.04502
LOSS ^{f)}	0.26516	0.18580	0.07536	0.28496	0.43820
ASSET	23.1182	5.4198	18.8728	23.5028	25.9570

a)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GAIN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내부거래이익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TR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부담률((t기 법인세비용±t기 이연법인세의 증가·감소)/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단 법인세부담률이 음수이면 0으로 추정)

TR(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부담률의 평균

EBG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EBGT(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j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LOSS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ASSE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자산총액의 자연대수(natural log)

b) 내부거래이익이 총자산의 10%를 초과하는 표본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c) 법인세부담률이 0인 적자표본과 1을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외한 수치이다.

d) 법인세부담률이 1을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외한 수치이다.

e) 내부거래이익을 뺀 세전이익이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표본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f) 공제가능 결손금이 없는 표본과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극단치를 제외한 수치이다.

α_3 은 양(+)의 부호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 4〉에는 두 가지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을 제시하였다. 내부거래이익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GAIN은 평균 0.0207이었고, 모든 표본에 대해 陽數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대부분의 연결그룹이 내부매출거래에서 이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크기가 총자산의 2.07%에 달한다는 것을 의미이다. GAIN의 측정과정에서 내부거래이익이 10%를 초과하는 표본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종속회사를 포함한 전체 연결

그룹의 법인세부담률을 의미하는 TR은 평균 0.297로서, 〈표 3〉에 보고된 지배회사만의 법인세부담률(0.341)보다 하락했다. 이것은 연결그룹 내에서 종속회사의 법인세부담이 지배회사보다 적다는 의미보다는, 연결그룹이 그룹차원에서 조세를 최소화하는 것에 대한 간접적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TR의 측정과정에서 법인세부담률이 1보다 큰 표본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고, 〈표 4〉에 보고한 수치는 법인세부담률이 0인 적자표본을 제외한 것이다.

TR(j)는 자신을 제외한 연결그룹 회사들의 평균

〈표 5〉 회귀모형의 예상부호와 회귀분석결과^a

회귀모형(1): $GAIN_{it} = \alpha_0 + \alpha_1 TR_{it} + \alpha_2 EBG T_{it} + \alpha_3 LOSS_{it} + \alpha_4 ASSET_{it} + \epsilon_{it}$

회귀모형(2): $GAIN_{it} = \alpha_0 + \alpha_{1a} TR_{it} + \alpha_{1b} TR(j)_{it} + \alpha_{2a} EBG T_{it} + \alpha_{2b} EBG T(j)_{it} + \alpha_3 LOSS_{it} + \alpha_4 ASSET_{it} + \epsilon_{it}$

회귀계수	예상부호	회귀모형(1) ^b (t value)	회귀모형(2) ^b (t value)
α_0	+/-	-0.202** (-1.916)	-0.231** (-2.205)
α_1	-	-0.414** (-1.987)	
α_{1a}	-		-0.359* (-1.495)
α_{1b}	+		0.177 (0.812)
α_2	-	-0.570*** (-2.954)	
α_{2a}	-		-0.482*** (-2.529)
α_{2b}	+		0.266 (1.291)
α_3	+	0.208 (1.105)	0.221 (1.056)
α_4	+/-	0.366** (1.977)	0.408*** (2.624)
표본수		512	512
수정R ²		0.324	0.293

a)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GAIN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내부거래이익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TR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부담률((t기 법인세비용±t기 이연법인세의 증가·감소)/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단 법인세부담률이 음수이면 0으로 측정)

$TR(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부담률의 평균

$EBG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EBGT(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j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LOSS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ASSE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자산총액의 자연대수(natural log)

b) 단측검정의 통계적 유의수준: * p<0.1, ** p<0.05, *** p<0.01

(사전에 부호를 예측할 수 없는 ASSET의 계수(α_4)에 대해서는 양측검정도 수행하였다. 양측검정의 경우 회귀모형(1)과 (2)에 대하여 α_4 의 통계적 유의수준(p)은 각각 0.078과 0.014로 하락한다.)

법인세부담률을 의미한다. <표 4>에서 TR(j) (평균 0.238)는 법인세부담률이 0인 적자표본도 포함하여 측정했기 때문에 TR(0.297)보다 낮게 나타났다. 내부거래이익을 제외한 세전이이익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EBGT는 평균 0.00407로서, 자신을 제외한 연결그룹 회사들의 평균 EBGT인 EBGT(j) (평균 0.00404)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EBGT와 EBGT(j)의 측정과정에서도 내부거래이익을 뺀 세전이이익이 총자산의 $\pm 20\%$ 를 초과하는 표본은 극단치로 간주하여 제외하였다. LOSS는 평균 0.265로 나타나서, 연결그룹의 결손법인이 보유하는 공제가능 결손금의 크기가 총자산의 26.5%에 이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OSS 역시 공제가능 결손금이 총자산의 50%를 초과하는 표본은 극단치로 분류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며, <표 4>에 보고한 수치는 공제가능 결손금이 있는 표본만을 측정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총자산의 자연대수(natural log)를 의미하는 ASSET은 평균 23.12로 <표 1>에서 지배회사만으로 구성된 표본에 대한 평균 자산총액 46,990억 원(자연대수 29.18)보다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것은 <표 4>의 표본에 대부분 지배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종속회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설명한 변수의 측정과정에서 총 84개의 표본이 극단치로 분류되어 표본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표 5>에 보고한 회귀분석은 총 512개의 최종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3.3 회귀분석결과와 해석

<표 5>에 나타난 두 가지 회귀모형의 분석결과는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였다. 먼저 회귀모형(1)에서 각각 가설1과 2를 검증하는 α_1 (TR)과 α_2

(EBGT)는 $-0.414(t=-1.987)$ 와 $-0.570(t=-2.954)$ 으로 나타나서, 이들 가설에서 예측한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였다. 가설3을 검증하는 α_3 (LOSS) 역시 가설과 일치하는 양의 값(0.208)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모형(2)에서는 독립변수로 TR(j)와 EBGT(j)를 추가하여 회귀모형(1)에서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1과 2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였다. 회귀모형(2)에서도 모든 계수의 부호는 가설과 일치하였다. α_{1a} (TR)와 α_{2a} (EBGT)는 각각 $-0.359(t=-1.495)$ 와 $-0.482(t=-2.529)$ 로 나타나서 회귀모형(1)의 α_1 과 α_2 와 유사한 음의 값을 보였으며, 이들과 반대의 부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던 α_{1b} 와 α_{2b} 는 예상대로 양의 값(0.177과 0.266)을 보였다. 그러나 α_{1a} 와 α_{2a} 를 제외한 나머지 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회귀모형(1)과 (2)에서 α_4 (ASSET)는 각각 0.366($t=1.977$)과 0.408($t=2.624$)로 나타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내부거래이익을 많이 인식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나,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지배회사의 규모가 종속회사보다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α_4 (ASSET)의 분석결과 는 지배회사의 내부매출액(down-stream sales)이 종속회사(up-stream sales)보다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 R^2 는 각각 0.324와 0.293으로 나타나서 회귀모형(1)이 회귀모형(2)보다 높았다. 이렇게 회귀모형(2)의 설명력과 회귀계수의 통계적 유의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가 TR과 TR(j), EBGT와 EBGT(j)의 상관성(multicollinearity)에서 기인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표 6〉 독립변수간의 상관관계(Pearson Correlation) 분석결과a

	TR	TR(j)	EBGT	EBGT(j)	LOSS	ASSET
TR	1					
TR(j)	0.244	1				
EBGT	0.498*	0.149	1			
EBGT(j)	0.177	0.259	0.292	1		
LOSS	-0.302*	-0.294	-0.358	-0.373	1	
ASSET	-0.324	-0.193	-0.199	0.035	0.198	1

a) 상관관계의 분석대상인 독립변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TR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부담률((t기 법인세비용±t기 이연법인세의 증가·감소) /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단 법인세부담률이 음수이면 0으로 측정)

$TR(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부담률의 평균

$EBG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EBGT(j)_{it}$ = i를 제외한 동일 연결그룹 소속 회사들(j)의 t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에서 내부거래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j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LOSS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법인세법상 공제가능 이월결손금을 i의 t기말 총자산으로 나눈 비율

$ASSET_{it}$ = 연결그룹 소속 회사 i의 t기말 자산총액의 자연대수(natural log)

* 양측검정의 통계적 유의수준: $p < 0.05$

를 분석하였다. 〈표 6〉에서 이들 변수는 각각 0.244와 0.292의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6〉에서 다른 독립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TR과 LOSS(-0.302), TR과 EBGT(0.498)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다. 이들의 상관성이 회귀분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상관된 변수를 번갈아 투입하는 방식으로 step-wise regression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분석결과는 〈표 5〉에 보고한 enter-type regression과 큰 차이가 없었다. step-wise regression의 분석결과, 회귀모형(1)과 (2)에서 TR을 제외하는 경우 LOSS의 계수(α_3)는 각각 0.281($t=1.471$)과 0.254(1.162)를 나타냈고, LOSS를 제외하는 경우 TR의 계수(α_1, α_{1a})는 각각 -0.470($t=-2.073$)과 -0.288 ($t=-$

-1.511)을 나타냈다. 또한 회귀모형(1)과 (2)에서 TR을 제외하는 경우 EBGT의 계수(α_2, α_{2a})는 각각 -0.370($t=-1.935$)과 -0.334($t=-2.117$)를 나타냈고, EBGT를 제외하는 경우 TR의 계수(α_1, α_{1a})는 각각 -0.305($t=-1.377$)와 -0.418($t=-1.208$)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는 〈표 5〉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이용한 과세소득의 이전을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하면 법인세가 감소한다”는 주장에 내재하는 기본 가정이 실증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것이다. 〈표 5〉의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한 것과 같이,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조세목적의 소득이전을 통해 이미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

하고 있다면,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연결납세로 인해 법인세가 감소한다 해도, 그 감소효과가 최근에 수행된 문헌적 연구나 과세 당국이 우려하는 것처럼 중요하거나 크지는 않을 것이다.

IV. 요약과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이미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총 205개 1대1 대응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와 달리,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이 개별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의 측정오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7년~2000년 동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총 257개 표본)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

세의 법인세부담률이 개별납세보다 0.013만큼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모두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 후에야 밝혀지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총 512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회귀분석은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회귀모형(1)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1)에서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1과 2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모형(2)에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법인세 감소효과에 대한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연결납세제도의 실제 도입

효과는 본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알 수 있는 사후적인 판단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적인 가정아래 수행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초기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

본 연구는 법인세부담률과 변동계수의 측정과정에 실제 법인세부담액과 과세표준 대신에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 재무제표의 수치에 근거한 추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다 신중하게 해석 또는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 김문현, 김난영 (2000),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연구원 연구보고서 00-05.
- 김성기, 안숙찬 (1994), "유효법인세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경영논집*(서울대학교), 28, 100-118.
- 김용훈 (1996), "조세지원의 효과에 관한 연구: 유효법인세율을 통한 분석," *세무학연구*, 7, 151-183.
- 노준화 (1997), "국가간 세부담차이가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이전가격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22, 4, 221-251.
- 오윤택, 정규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의 타당성 검토와 도입방안," *회계와감사연구* 37, 53-85.
- 이광재 (2001), "결합재무제표의 유용성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 *증권학회지* 29, 281-308.
- 이우택 (2001), "우리나라 연결납세제도의 도입방안과 실행가능성에 관한 연구: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가 연결납세제도의 비교연구," *세무학연구*, 17, 69-128.
- 손영화 (2001),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연구," *상장협* 43, 170-191.
- 전규안 (1998), "조세부담의 공정성 분석," *세무학연구* 11, 7-42.
-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2, 4, 23-59.
- 최기호 (2001), "연결납세제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실증 연구," *한국회계학회 2001년도 동계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147-163.
- Beatty, A. and D. Harris (2001), "Intra-Group, Interstate Strategic Income Management for Tax, Financial Reporting, and Regulatory Purposes," *The Accounting Review* 76, 4, 515-536.
- Crestol, J., K. Hennessey, and R. Yates (1998), *The Consolidated Tax Return: Principles · Practice · Planning*, Warren, Gorham & Lamont.
- Harris, D. (1993), "The Impact of U.S. Tax Law Revision on Multinational Corporations' Capital Location and Income-Shifting Decision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Supplement), 111-140.
- Jacob, J. (1996), "Taxes and Transfer-Pricing: Income Shifting and the Volume of Intra-Firm Transfer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4, 301-312.
- Klassen, K., M. Lang, and M. Wolfson (1993), "Geographic Income Shifting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response to Tax Rate Changes,"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1 (Supplement), 141-173.
- Wang, S. (1991), "The Relation between Firm Size and Effective Tax Rates: A Test of Firms' Political Success," *The Accounting Review*, 66, 1, 158-169.

Early Evidence on the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Kwangjae Lee*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the expected economic consequences of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which recent archival studies have claimed to be useful for improving the horizontal equity of Korean corporate tax system. An empirical analysis show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horizontal tax equity between consolidated groups and non-consolidated firms under the current tax system. Further analysis also proves that the tax equity of consolidated groups is not expected to increase even under the consolidated tax system. Regression results are exactly consistent with my prediction that Korean consolidated groups have already been minimizing their corporate tax by shifting the high-tax affiliate's income to the low-tax ones through intra-group sales. These results provide early evidence confirming that consolidated tax system will not improve the horizontal equity of Korean corporate tax system, and the reduction of corporate tax revenue will not be so substantial as the recent archival studies and Korean tax authority have argued.

Key words: Consolidated tax return, Horizontal tax equity, Tax minimization, Tax-purpose income-shifting.

* Associate Professor, Divis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